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2. 14 선고 2022가단5045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효영

피 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연

담당변호사 한두환

변 론 종 결 2023. 1. 17.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657,744원 및 그 중 4,373,114원에 대하여 2021. 9. 6.부터 2023. 1. 17.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0. 10.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0. 11. 6. 접수 제498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① 2016. 9. 12. 피고 A이 C은행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② 2016. 9. 27. 피고 A이 D은행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③ 2020. 3. 18. 피고 A이 C은행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각 그 무렵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서를 위 각 은행에 제출하고 금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이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소정의 지연손해금율(현재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8%이다)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보증료, 손해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이 유발한 신용보증사고에 따라 원고는 2021. 8. 12. D은행에 2,144,154원, 2021. 9. 6. C은행에 10,064,022원 및 1,519,70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관련한 확정손해금 284,630원이 발생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위 다.항 기재 돈 중 일부를 변제받았고, 2021. 9. 6. 기준 미지급 원금 4,373,114원 및 확정손해금 284,630원이 남아 있다.

마. 피고 A은 2020. 11.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0. 25.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에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498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원금 및 확정손해금 합계 4,657,744원 및 그 중 구상금 원금 4,373,11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 9. 6.부터 2023. 1.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23. 1. 17.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 이전에 이미 원고의 제2항 기재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었던 점, 피고 A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이로써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제2항 기재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채무자가 그 채무 있음을 알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그 매매행위가 상당한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라고 하여 반드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1534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152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고,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이 원고에 대한 채무가 있음을 알면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피고 B의 배우자인 E가 피고 A에 대하여 15,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 A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은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A의 구체적인 채권, 채무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피고 A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 부족한 경우 피고 A이 피고 B에게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일부

채무를 변제한 것은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 B의 약의 추정이 반복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결국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범

별지